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 경위

- 가. 제출자: 서울특별시장
- 나. 의안번호: 제2427호
- 다. 제출일자: 2018. 3. 20
- 라. 회부일자: 2018. 3. 26

2. 제안 사유

한강공원 내 신규 조성된 서울함공원의 이용료를 신설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자전거도로에서 통행이 금지된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 에서 전기자전거를 제외하여 효율적인 공원운영을 기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가. 서울함공원 이용료 신설(안 별표2 제8호)
 - 한강공원 내 신규 조성된 서울함공원 이용료를 신설하여 이용료 징수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안 제17조제1항제10호, 별표3 제10호)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는 한강공원 내에서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자전거도로에서 전기자전거 통행이 허용됨에 따라(' 18.3.22.시행) 전기자전거를 단속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변경하고자 함.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협의완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해당사항 없음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협의완료
- (4)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협의완료
- (5) 갈등조정담당관(갈등영향분석평가): 협의완료

라. 기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붙임
-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도 붙임

5. 검토의견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강공원 내에 새롭게 조성된 서울함공원 이용료의 적정 요금을 설정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한강공원 자전거도로에서 전기자전거의 통행을 허용하고자 하는 것임.
- 이밖에, 한강시민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임기와 연임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1) 서울함공원 이용료 신설(별표 2 제8호)

- 서울함공원은 망원한강공원 내에 위치하여 시민들에게 군함체험, 전시관람 등 새로운 문화공간을 제공할 목적으로 2017년 11월에 개장하여 민간위탁관리¹⁾ 형태로 운영 중인데,
- 현재 서울함공원의 이용요금은 조례로 정해져 있지 않고, 본 조례 제14조 제4항²⁾에 따라 시장방침인 「서울함 공원 운영계획」에서 입장료를 정하여 운영해 왔음.

<표 1> 서울함공원 입장료 신설안

구분	현행 시장방침		신설안		비고
	개 인	단 체	개 인	단 체	
어린이	1,000원	700원	700~2,000원	500~1,500원	6~12세
청소년·군인	2,000원	1,400원	1,500~3,000원	1,00~2,000원	13~18세
성 인	3,000원	2,000원	2,000~4,000원	1,500~3,000원	19세 이상

1) 위탁업체 : (주) 씨엔피트러스트 공동수급체(3개 업체)

위탁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간

위탁방법 : 예산지원형 위탁(소요예산 : 연간 5억 2천8백만원)

2) 제14조 제4항 :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운영하거나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료 및 감면 등에 관하여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따라서, 본 조례의 공원이용시설 이용료에 서울함공원을 신설하여 시설 이용에 따른 징수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2)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통행허용(안 제17조 제1항 제10호, 별표 3 제10호)

- 현재 한강공원내에서는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나, 관계 법령인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전거법”) 및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진출입이 허용됨에 따라, 본 조례에 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견은 없음.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018.3.22. 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의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도로교통법(2018.3.27. 시행)

제2조(정의)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
- 나.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 다만, 현재 자전거법에서 인정하는 전기자전거는 최고 시속 25킬로미터, 무게 30킬로그램 미만에, 페달을 밟아야 전동기가 작동하는 ‘PAS(Pedal Assist System) 방식’ 이어야 하나, 실제로 가속기 조작으로 전동기만으로 움직이는 ‘스로틀 방식’의 전기자전거도 판매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며, 전기 자전거를 개조하여 운행속도를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전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활동도 필요함.

- 덧붙여, 전기자전거 외관상으로 불법 개조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움에 따라 효과적인 단속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안전운행을 위한 홍보와 교육 등의 캠페인 활동도 지속적으로 병행해야 할 것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 등) ① 전기자전거는 구조와 성능 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전기자전거를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의2(전기자전거 운행 제한)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가 전기자전거를 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표 2> 전기 자전거 유형

PAS 방식(출처 : electricbikereview.com)	스로틀 방식(출처 : endless-sphere.com)
<p>페달을 밟아야 전동기가 구동되는 방식으로 자전거도로에 통행이 가능함</p>	<p>가속기 레버를 작동시켜 전동기만으로 움직이며,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면허를 따고 차도로 다녀야 함</p>
	

있어, 적극적인 참여는 반드시 필요하나, 연임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위원의 임기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3항⁴⁾에 따라 2회까지 연임 가능하지만, 녹색서울시민위원회나 도시공원위원회 등에서는 위촉위원이 위원회의 심의나 정책 결정과정에서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제한하고,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 연임 횟수를 한 차례로 제한하고 있는바, 본 위원회에서도 연임 제한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3항 : 위원회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을 위촉 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같은 직위의 위원장이 속한 위원회의 경우에는 2개)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위촉 해제 후 비위촉기간이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위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